

순천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규정

제정 1989. 08. 11

개정 1992. 08. 10

개정 1997. 07. 14

개정 2000. 08. 23

전면개정 2003. 07. 23

개정 2013. 10. 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기초과학의 연구
2. 기초과학 관련단체 및 지역사회의 교육, 지도 및 자문
3.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 기관의 수탁용역 연구
4. 기초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세미나 개최
5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3조(임원) 연구소에는 소장 1인, 각 연구부장 1인, 간사 1인을 두고,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소장의 임무·임명)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,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2013.10.02.)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는 (전임)연구원, 연구보조원, 특별연구원, 겸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박사후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전임연구원, 특별연구원 및 박사후 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(위촉)하며, 그 이외의 연구원은 소장이 임명(위촉)한다.

③ (삭제 2013.10.02)

④ 각 연구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6조(조직) 연구소에는 다음의 연구부를 둔다.

1. 수리학연구부 (개정2013.10.02.)
2. 물리학연구부
3. 화학연구부
4. 생명과학연구부
5. (삭제 2013.10.02)

제7조(총회) ① 연구소는 규정의 제정·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연구원으로 구성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.

③ 총회는 재직연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소장, 각 연구부장, 간사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2. 이 규정 시행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칙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
4.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
5.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
6. 연구소의 사업계획, 예산·결산, 인사에 관한 사항
7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각 연구부에는 연구협의회를 두고 연구부장이 주관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학술연구발표회) 연구소에는 연구원의 학술연구 발표회를 가질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에게도 연구발표회의 기회를 줄 수 있다.

제10조(연구논문집) 연구소는 논문집을 발간할 수 있다. 논문게재는 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.

제11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 지원금,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 및 결과보고)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매학년도 초에 총장에게 제출하고, 매학년도 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산귀속)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 그 재산은 이 대학교에 귀속되며, 연구를 목적으로 한 비품도 이에 준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연구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(2003. 7. 2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0. 0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